서울과학기술대학교 좋은환경만들기 추진단 운영 규정

제정 2006. 12. 14.

개정 2008. 11. 28.

개정 2010. 2.22.

개정 2010. 8.30.

제1장 총칙
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좋은환경만들기추진단(이하 "추진단"이라 한다.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0.2.22, 2010.8.30>
- 제2조(조직) ① 추진단에 단장을 두되, 단장은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 - ② 단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좋은환경만들기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.
 - ③ 추진단의 행정사무 처리를 위하여 행정직원을 둔다.
- 제3조 (관장업무)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.
 - 1. 좋은환경만들기 추진에 관한 기본 계획 수립
 - 2. 좋은환경만들기 추진 항목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
 - 3. 좋은환경만들기의 날 지정 · 운영 및 행사에 관한 사항 <개정 2010.2.22>

- 4. 환경지킴이 운영에 관한 사항
- 5. 좋은환경만들기 위반자 조치에 관한 사항
- 6. 좋은환경만들기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
- 7. 좋은환경만들기추진단 운영규정의 모든 업무에 관한 사항
- 8. 기타 좋은환경만들기에 관한 사항

제2장 좋은환경만들기 위원회

- 제4조(좋은환경만들기 위원회) 교내 환경보호와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좋은환경만들기 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.)를 둔다.
- 제5조(심의)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- 1. 좋은환경만들기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
 - 2. 좋은환경만들기 부서별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
 - 3. 기타 좋은환경만들기와 관련된 중요 사항 등
- 제6조 (구성 및 운영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인 이내로 구성하며, 당연직 위원은 별표와 같다. <개정 2010.2.22>
 - ②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교수협의회 대표, 직원대표, 학생대표, 환경을 생각하는 교수모임 대표 등으로 구성하고 총장이 임명한다.
 - ③ 위원장은 총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좋은환경만들기추진단장이 된다.
- ④ 당연직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제7조(위원장 등의 임무) ① 위원장은 회무를 관장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.
-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 제8조(회의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
 - ②회의는 매학기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, 교내 환경보호 활동에

- 관한 월별 계획수립 및 실적에 대한 점검 등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. <개정 2010.2.22>
-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제9조(간사 및 서기) 위원회에 소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.
- 제10조(소위원회) ① 좋은환경만들기 운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추진단 및 대학(원)별로 소위원회를 둔다. 단, 대학원 소위원회는 산업 대학원이 주관하여 운영한다. <개정 2010.2.22>
 - ②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.
 - 1. 소관 구역의 환경보호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ㆍ시행
 - 2. 추진실적 자체평가, 점검
 - 3. 추진실적 및 계획의 점검·추진
 - 4. 기타 소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
- 제11조(소위원회 구성) ① 추진단 소위원회는 추진단장, 단과대학장, 학생처장, 총무과장, 시설과장, 총학생회장, 학생복지위원장 등으로 구성하며 추진 단장이 위원장이 된다.
 - ② 단과대학(원) 소위원회는 단과대학(원)장, 소속 학과장, 행정실장, 학생대표, 교수협의회 교수, 조교 대표 등으로 구성하여 단과대학(원)장이 위원장이되어 자체적으로 위원을 구성하여 운영한다.
- ③ 소위원회의 간사는 행정팀장 중 위원장이 선정한다. <개정 2010.2.22> 제12조(소위원회 회의) 소위원회 회의는 매월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, 의사 결정 방법은 제8조③항을 준용한다. <개정 2010.2.22>

제3장 좋은환경만들기 추진항목

- 제13조(환경보호 캠페인 전개) 교내 구성원과 외부 출입자 등을 대상으로 환경보호 및 지키기의 중요성과 환경사랑 방법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한다.
- 제14조(주차관리) 교내 주차질서 확립과 안전을 위하여 주차관리시스템을 정비하고 개선한다.
- 제15조(학교시설물 이용통제) ① 외부인의 학교시설물 사용은 학습 환경을 저해하지 않거나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.
 - ② 학교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시설물 사용료와는 별도로 환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고 시설물 사용 후 청소 등 정리 상태에 따라 보증금을 반환하는 환경보증금 제도를 시행한다.
- 제16조(음식물 통제) ① 교내에서 음식물을 주문하여 반입하는 행위를 자제하되, 부득이하게 음식물 반입 시 해당 음식점으로 하여금 음식물 수거용 쓰레기 봉투를 지참하여 배달토록 하며, 즉시 수거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이행토록 한다.
 - ② 제1항을 위반하여 음식물을 반입한 자에 대하여는 불이익 처분을 한다.
- 제17조(애완동물 출입통제)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교내에 애완 동물을 동반하여 출입하는 것을 제한한다. 단 안내견 등 부득이하게 애완 동물의 출입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배설물 수거용 비닐봉투 등을 지참하여 분뇨 등을 직접 수거·처리토록 한다.
- 제18조(건물내 금연)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 학교 구성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건물 내 흡연행위를 금지한다.
- 제19조(잔디밭 출입통제) 학교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허용된 잔디밭 이외의 잔디밭 출입을 제한한다. 단, 학교 및 학과 행사 등 부득이

- 하게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 승인을 얻어서 사용할 수 있다.
- 제20조(게시물 게시원칙 및 관리) ① 정문에는 학교당국을 포함, 누구도 게시물을 게시할 수 없으며, 모든 홍보용 게시물은 학교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 - ② 현수막, 홍보용 팜플렛 등 모든 게시물은 위원회에서 정한 지정장소에 한하여 게시 또는 부착할 수 있다.
 - ③ 지정장소 외에 게시 또는 부착된 광고물에 대하여는 부착자의 동의없이 철거한다.
- 제21조(기타 필요사항) 제13조 내지 제20조의 항목 이외에 좋은환경만들기에 필요한 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추진한다.

제4장 환경보호 제도 및 운영

- 제22조(좋은환경만들기의 날 및 환경보호구역 지정·운영) 위원회의 또는 소 위원회의 개최일을 좋은환경만들기의 날로 정하며, 부서별 담당구역을 지정 하여 쓰레기 줍기, 교내 청소 등 환경보호활동을 정기적으로 수행한다. <개정 2010.2.22>
- 제23조(환경지킴이 운영) ① 환경훼손행위, 주차 위반행위 등 교내 질서보호를 위하여 환경지킴이 제도를 운영하며,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단속·점검· 계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.
 - 1. 주차 위반행위
 - 2. 음식물 수거용 쓰레기 봉투 미사용
 - 3. 외부인의 학교환경 훼손행위(애완동물 배설물 방치, 잔디밭 출입, 음식물 반입 등)

- 4. 각종 쓰레기 투기
- 5. 금연구역내 흡연행위
- 6. 학습 환경 저해 행위
- 7. 지정된 장소이외의 게시물 게시
- 8. 기타 환경훼손 행위
- ② 환경지킴이는 학생, 교수, 직원 등을 포함하여 구성한다.
- 제24조(환경보호 온라인 신고센터 운영) ① 건물내 흡연, 쓰레기 투기, 청소 상태 불량, 제한구역내 음식물 반입행위, 주차위반 등 환경보호 위반자에 대한 신고기능과 각 건물별 청소상태 등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기 위 하여 환경보호 온라인 신고센터를 운영한다.
 - ② 신고센터를 통하여 주기적으로 호관별 청소 및 청결상태를 모니터링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필요시 이에 대한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.

제5장 운영세칙 등

- 제25조(사전홍보) 제3장 좋은환경만들기 추진항목과 제4장 환경보호제도 시행 초기에는 교내 구성원 및 외부인이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 달 이상의 홍보기간을 가져야 한다.
- 제26조(경비지원) 좋은환경만들기 운동에 소요되는 회의비, 수당 등 최소 필요경비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
- 제27조(운영세칙)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 좋은환경만들기에 필요한 추가 사항은 총장이 정하되, 환경보호에 관한 중요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.
- 제28조(단계별 시행) 이 규정에 정한 좋은환경만들기 추진항목은 중요도 등을

감안하여 우선순위를 두어 단계별로 시행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단계별 추진항목의 결정은 좋은환경만들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정의 시행으로 서울산업대학교 좋은환경만들기 운영 규정은 폐지한다.

부칙(2008.11.28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제607호, 2010.2.22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제57호, 2010.8.30)

이 규정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 (교명변경에 따른 일괄개정)

좋은환경만들기위원 명단

2008.10.기준

번호	구 분	직 위		비고
1	위원장	총장	당연직	
2	위원	좋은환경만들기추진단장	당연직	
3		산업대학원장	당연직	
4		공과대학장	당연직	
5		자연생명과학대학장	당연직	
6		조형대학장	당연직	
7		인문사회대학장	당연직	
8		교무처장	당연직	
9		학생처장	당연직	
10		기획처장	당연직	
11		사무국장	당연직	
12		공동실험실습관장	당연직	
13		중앙도서관장	당연직	
14		신문방송사주간	당연직	
15		홍보실장	당연직	
16		산학협력단장	당연직	
17		테크노폴리스추진센터소장	당연직	